

하동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하동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하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. 10. 22.

하동군의회의회장 강 희 순

1. 조례명: 하동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○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청문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별표로 정하여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(안

제2조 및 별표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(수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유무와 사유, 수정의견)
- 2)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
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 방법

- 1) 팩스: 055-880-2939
- 2) 하동군의회 홈페이지(<http://www.hdcl.go.kr>) 열린마당(의회에
바란다)
- 3) e-mail: uu1028@korea.kr

붙임 1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하동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 례 명: 하동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(조항)	찬 성 여 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하동군 조례 제 호

하동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동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인사청문대상)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7조의2제 1항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별표와 같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군수**”를 “하동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하동군의회 인사청문 대상(제2조 관련)

연번	인사청문대상 직위
1	재단법인 하동차앤바이오진흥원 원장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인사청문대상) 인사청문대상자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7조의2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동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으로 한다.	제2조(인사청문대상)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별표와 같다.
제5조(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자료)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1. ~ 5. (생략)	제5조(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자료) 하동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